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5. 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2월 21일
- 나. 제출자 : 신흥식 의원 4외
- 다. 회부일자 : 2013년 2월 22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 4.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환경변화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을 구체화 함(안 제3조)
- 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4조)
- 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라 작성되는 회의록의 작성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9조)
-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주민 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에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고,
 - 안 제9조에 회의록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명시하고, 필요시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조사·연구의 의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
----------	-----

발의연월일 : 2013년 2월 일

발 의 자 : 신홍식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행정환경변화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을 구체화 함(안 제3조)
- 나. 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4조)
- 다. 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라 작성되는 회의록의 작성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9조)

- 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주민 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보건지원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지역주민
3.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전문가

5. 관계공무원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조제1항(중전의 제4조제1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제1항(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로, “임시회의”를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5조제2항) 중 “개회하고”를 “개회하고”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제5항(중전의 제6조제5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중전의 제8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중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중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중전의 제11조) 중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를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u>건의료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u>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u> 2. <u>지역주민</u> 3. <u>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u> 4. <u>보건의료관련전문가</u> 5. <u>관계공무원</u>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p> <p><u><신 설></u></p> <p><u>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총괄하며 -----.</u></p>

② ~ ③ (생략)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④ (생략)

제6조(소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생략)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
----- 임시회-----

② -----
----- 개회하고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소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대
해서-----

-----.

제8조 (현행 7조와 같음)

제11조(수당과 여비) -----
----- 대해서--
----- 범위 안에서-----
-----.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
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

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
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
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
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
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p>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2조(운영세칙) ----- -----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u>에</u> ----- -----.</p>
--	--